

#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기획법관 제도의 변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사법행정 업무처리 법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“기획법관” 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 으로 개정함(안 제3조제1호)

## 3.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안

붙임과 같음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기획법관” 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안
<p>제3조 (업무 협의의 주체)</p> <p>각급법원등에서 자료제출 등 요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통하여야 한다.</p> <p>1.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<u>기획법관</u></p> <p>2. ~ 3. (생   략)</p>	<p>제3조 (업무 협의의 주체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 <u>사법행정지원법관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216